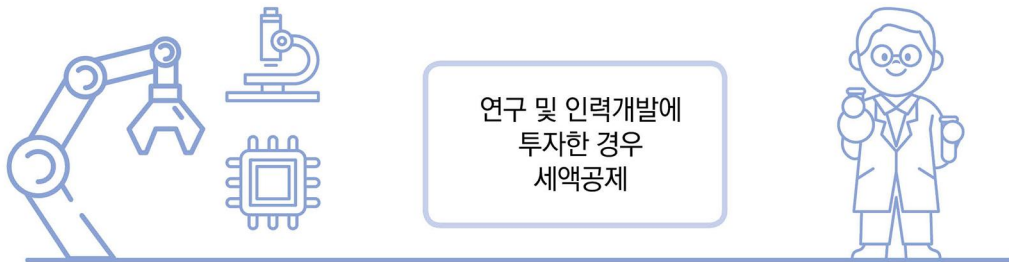


##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란 ?

-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 6의3, 별표7, 별표7의2\*에 나열된 비용
  -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인공지능 관련 8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 \* 2023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4개 분야 추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 분야 추가
-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취소 되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제시점을 차등화 함

## 지원 내용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간(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여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일반·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기준과 일치시킴
- 중소기업 졸업수 공제율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간 중소기업 적용공제율과 중견기업 적용 공제율의 중간 수준 공제율을 적용함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 (① + ② + 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가. + 나.)\*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의 경우 : 30%
- 2) 그 밖의 경우 : 20%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나.  $\frac{\text{당기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text{배, 한도 } 10\%$

-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가. + 나.)\*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의 경우 : 40%
- 2) 그 밖의 경우 : 30%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나.  $\frac{\text{당기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text{배, 한도 } 10\%$

-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text{세액공제금액}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text{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times \text{일정비율}^*$$

- \* 1) 일반기업의 경우 25%
- 2) 중견기업의 경우 40%
- 3) 중소기업의 경우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text{세액공제금액}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times \text{일정비율}^*$$

- \* 1) 중소기업의 경우 : 25%
-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초 3년간 20%, 이후 2년 간 15%
- 3) 중견기업의 경우 : 8%
- 4) 1)부터 3)까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frac{\text{당기일반연구·인력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50\%$ , 한도 2%

### 공제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제외된 후 1~3년	제외된 후 4~5년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용	당해연도 투자금액	25%	20%	15%	8%	2%를 한도로 함**
	초과금액	50%	40%	40%	40%	25%
신성장연구· 인력개발비	가 항목	30%	20%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3년 이내 25%)			
	나 항목	$\frac{\text{당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 한도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가 항목	40%	30%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3년 이내 35%)			
	나 항목	$\frac{\text{당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 한도 10%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충족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중소기업 한정)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① 세액공제신청서
  - ②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③ 증거서류(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 2 및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2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Q. 질문 1

주식회사 절세를 영위하는 나사장님은 절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 A.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인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산한 비용에 불과하여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sup>215)</sup>

215) 대법원2014.3.13., 2013두22147

## Q. 질문 2

중소기업의 상무이사인 나상무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를 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및 경쟁회사의 직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상무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나상무는 세액공제를 부인당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 A. 세무사 답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세액을 공제받는 규정이지만, 상무이사등이 접대업무를 겸하는 경우나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영역을 수행하여 세액 불공제되는 사유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상무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타업무를 겸직하였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인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전담부서의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sup>216)</sup>
- ☞ 연구개발부서의 상무이사가 **법인카드로 거래처에 접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내역에 다수의 거래처에 접대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sup>217)</sup>
- ☞ 연구요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sup>218)</sup>

## Q. 질문 3

주식회사 절세의 대표이사 나사장은 자동차 주요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10년째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사장은 경쟁사의 제품 기술 향상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성장세가 둔화되고, 예전같이 마진을 못 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지금의 가격경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연구전담요원을 선발하여 신제품 개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연구부서에서 신제품 개발 성공으로 급격한 수입금액 증가가 예상되었지만, 신제품 개발에 소요된 연구부서의 인건비 등의 추가 지출로 회사 자금 상황에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000,000원 (2022년) 17,000,000원 (2023년) 25,000,000원 (2024년) 30,000,000원
- (2025년) 40,000,000원

이때 나사장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문제로 절세방안이 없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16) 조심 2012서523, 2012.8.6., 대법원 2011.6.24. 선고2011두6844 판결

217) 조심2014중3244 (2014.08.11.)

218) 서면2탐-2279, 2006.11.09.

## A.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를 검토해본 결과 연구전담부서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근거

2025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 Max [ ㉠, ㉡ ] = 10,000,000원

㉠ 총액발생기준 :  $40,000,000 \times 25\% = 10,000,000$ 원

㉡ 증가액발생기준 :  $(40,000,000\text{원} - 30,000,000\text{원}) \times 50\% = 5,000,000$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3. 22.)

## 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b>1</b>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00.00.00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대전 유성구 장대동 00-0 (전화번호 : 000-0000 )					
<b>2</b> 과세연도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b>3</b> 신청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6B	25%	10,000,000	10,000,00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5. 3. 21.>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철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00.00.00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00-0 (전화번호: 000-0000 )	

② 과세연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③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정 과목	구분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⑥ 금액	건수	⑦ 금액	건수	⑧ 금액
개발비		2	30,000,000	12	10,000,000		
합 계		2	⑥ 30,000,000	12	⑦ 10,000,000		⑧
계정 과목	구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⑪ 총 계 (⑥+⑦+⑧+⑨+⑩)	
		인원	⑨ 금액	건수	⑩ 금액		
							40,000,000
합 계						40,000,000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⑪)	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⑭+⑮+⑯+⑰)	'24.01.01~'24.12.31 ⑭ (직전 1년)	'23.01.01~'23.12.31 ⑮ (직전 2년)	'22.01.01~'22.12.31 ⑯ (직전 3년)	'21.01.01~'21.12.31 ⑰ (직전 4년)
40,000,000	78,000,000	30,000,000	25,000,000	17,000,000	6,000,000
⑱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⑬/4)	19,500,000	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⑯)/3]	24,000,000	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2]	27,500,000
㉑ 증가발생액(⑫-⑭)					10,000,000

④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㉒ 대상금액(=⑫)	㉓ 공 제 율	㉔ 공제세액 (㉒×㉓)
		40,000,000	25%	10,000,000

중기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 인력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⑱경우 공제 제외)	㉕ 대상금액	㉖ 공제율	㉗ 공제세액	* 공제율 ■ 중소기업 : 50% ■ 중견기업 : 40% ■ 대기업 : 25%
	10,000,000	50%	5,000,000	

④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㉔와 ㉗ 중 선택)	10,0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㉔와 ㉗ 중 선택)	
	중견기업 (㉕와 ㉗ 중 선택)	
	일반기업 (㉕과 ㉗ 중 선택)	

3편 [기업성장 조세지원]

(뒤쪽)

**5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6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용어 해설**

- 구분경리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을 말함,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p>•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 ② + 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p> <p>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p> <p>㉠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30%</p> <p>㉡ <math>\frac{\text{당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10\%</math></p> <p>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 + ㉡</p> <p>㉠ 당해 과세연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40%</p> <p>㉡ <math>\frac{\text{당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10\%</math></p> <p>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p> <p>㉠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b>25%</b></p> <p>㉡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b>50%</b></p> <p>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p>	<p>•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 ② + 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p> <p>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p> <p>㉠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5%)</p> <p>㉡ <math>\frac{\text{당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10\%</math></p> <p>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 + ㉡</p> <p>㉠ 당해 과세연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30%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5%)</p> <p>㉡ <math>\frac{\text{당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 10\%</math></p> <p>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p> <p>㉠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b>8%</b>, 중소기업제외 1~3년 <b>20%</b>, 4~5년 <b>15%</b></p> <p>㉡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b>25%(중견 40%)</b></p> <p>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p>

R&D 사전심사 제도

- R&D 사전심사 신청제도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란?
  - (증거서류 작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3항에 따른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 (보관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 (작성방법) 연구노트는 연구를 수행한 내역을 연구자별 또는 연구 프로젝트 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발상·실험 과정·진행 내역 및 실패·성공 사례를 기록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연구노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연구노트포털을 통해 확인가능
    - 연구노트 안내 : <http://www.e-note.or.kr/introduction/noteIntro.do>
    - 연구노트 온라인 교육 : <http://www.e-note.or.kr/education/online/movieList.do>
    - 연구노트 제작템플릿(체크리스트) : <http://www.e-note.or.kr/paper/noteTemplateList.do>
- R&D 사전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b>신청방법</b>		• 우편, 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
<b>신청대상</b>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 없음
<b>신청기한</b>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b>제출서류</b>	<b>신청서</b>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b>첨부서류</b>	•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중소기업 R&D 사전심사 신청 문의는?  
☎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의 각 지방국세청에서 담당

업무분장	심사청	부서명	주소
중소기업 사전심사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 (02) 2114-3033~40
	충북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031) 888-4963~9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 (032) 718-6494~6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 (042) 615-249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062) 236-7483, 7486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 (053) 661-7486-7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 (051) 750-7463~5